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8
------	-----

발의년월일 : 1994. 9. 15

발 의 자 : 구본춘의원의 4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및 동법 시행령 개정('94. 7. 6)에 따라 의회 행정 사무의 감사, 조사에 있어 출석 및 증언진술을 거부하고 허위증언을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대상 사무를 기관 위임 사무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등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을 종전 정기회기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안제2조)
- 감사대상 사무를 종전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 사무까지 구의회에서 확대 실시(안제6조)
- 종전에는 증인의 출석거부와 위증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증인에 대한 선서 규정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 및 증언, 진술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조례 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기간중 3일”을 “회기중 7일”로 한다.

제 3 조 제 3 항중 “제 2 항”을 제 1 항”으로 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3호 “구산사 동사무소”를 “구관할 전행정동”으로 한다.

제 5 조 제 1 항 4호,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5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 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 9 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직할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부산직할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

제 9 조 제 1 항중 “그 보조기관”을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한다.

제 9 조 제 3 항, 제 4 장,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인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감사)		제 2 조(감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회기중 7일이내로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 3 조(조사)		제 3 조(조사)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제1항.....		
제 5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 5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구산하 동사무소 <신설>		3. 구 관할 전 행정동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 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 6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 6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하 되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직할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부산직할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 사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 9 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 9 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 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절차는 법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은 별지 1호서식의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별지 1 호]

宣 誓 書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위원장 귀하